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8월 11일
- 회부일자 : 2003년 8월 12일

3. 제안이유

-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06902호, 2003.5.29)에 의거 중평출장소가 중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 道の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529명 \Rightarrow 2,382명 (Δ 14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62명 \Rightarrow 1,315명 (Δ 147명)
 - 소방·대학·의회의 정원 : 변동없음
-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중 “출장소” 자구 정비
- 다른 조례의 개정 :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 정비
 - 충청북도 명예연구소운영조례 등 9건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독립자치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자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중평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2003. 5. 29일 중평군설치에관한법률(법률 제06902호)이 제정 공포되어 2003. 8. 30일부터 중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지방자치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의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 범위 안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의 단서규정의 필요성과,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효력 유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